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2

부 산 고 등 법 원

창원제1행정부

판 결

사 건	(창원)2018누1097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피고, 피항소인	[redacted]시 [redacted]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redacted] 담당변호사 [redacted]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8구단10829 판결
변론종결	2019. 1. 9.
판결선고	2019. 2.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4. 17. 원고에게 한 취득세 86,819,90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8,681,9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2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2. 30.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 E[주식회사 B은 2016. 9. 1.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다가 2017. 2. 2. 폐지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211호), 2017. 2. 17. 파산이 선고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하합15호). 이하 위와 같은 과정을 통틀어 'B'이라 한다]와 사이에, 부산C 내에 있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발행 주식 중 B 소유 주식 420,000주(총 발행주식 700,000주의 60%,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51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주식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7. 3. 21. 피고에게 '2017. 1. 25.자로 B에 이 사건 주식의 잔금을 완납하여 소외 회사 소유의 창원시 진해구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며 취득세 86,276,360원, 농어촌특별세 8,627,630원 합계 94,903,990원을 자진신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 그러나 이후 원고는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고, 피고는 2017. 4. 17. 원고에게 취득세 86,819,900원(가산세 543,540원 포함), 농어촌특별세 8,681,980원(가산세 54,350원 포함)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소외 회사가 입주한 항만배후단지의 관리기관인 부산항만공사는 2017. 3. 29. 'C 배후단지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주식 취득으로 인한 소외 회사의 대주주변경을 불승인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5. 30. B에 이 사건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고, 2017. 6. 16. 매매대금을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5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2

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5항에 따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주식을 취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주주권을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원고처럼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주식양수인은 주주권행사가 허용되지 않는 점,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주변경에 관하여 사전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원고로서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한 적이 없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신고는 그 하자가 중대하여 무효이므로, 위 신고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원고가 과점주주 지위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이 사건 신고의 하자 여부)

1) 관련 법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본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재산을 직접 취득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과점주주에게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간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2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호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요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두44753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각 증거 및 갑 제3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B으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인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원고와 B은 이 사건 계약에서 원고가 B에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더라도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주변경을 승인받기 전까지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비로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경영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신고는 원고가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주변경을 승인받기 전이라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회사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 지위를 아직 취득하지 못한 상태였음에도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라고 신고한 하자가 있다.

① 별지2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제4조에서 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2

고의 주식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정하면서 이와 별도로 제5조에서 B의 이 사건 주식 이전기일을 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계약 제5조에 의하면, B은 원고가 부산항만공사로부터 투자자(주주) 변경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인도하여야 하고(제1항), 원고가 매매대금 등을 모두 지급한 경우에는 제1항의 주식 인도일에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주권(발행된 경우),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 소외 회사 임원들의 사임서 등을 교부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제2항). 한편, 이 사건 계약 제6조 제2, 3항에 의하면,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인도하기 전까지 소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채 소외 회사를 운영한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은 '원고의 매매대금 지급 - 부산항만공사의 주주변경 승인 - B의 이 사건 주식 인도 - 원고의 소외 회사 경영권 인수'의 순으로 주식양수도절차가 진행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주주변경을 승인받은 이후인 '이 사건 주식의 인도일'부터 소외 회사의 주주로서 주주권을 행사하여 소외 회사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게 된다.

② 원고와 B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함께 체결한 질권설정 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주주변경 승인을 받아 이 사건 주식을 인도받을 때까지 B은 원고가 지급한 주식 매매대금을 정기예금 계좌에 별도로 예치하고 원고를 질권자로 한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원고와 B은 이 사건 계약에서 부산항만공사의 주주변경 승인이 있을 때까지 B의 매매대금 사용을 유보하고 원고의 매매대금 반환청구권을 보장하도록 정하였다.

③ 항만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제정된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2016. 12. 16. 해양수산부고시 제2016-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4 제1, 2항은 항만배후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2

입주기업이 주식 양도·양수를 통해 출자자를 변경하거나 5% 이상의 출자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리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부산항만공사와 소외 회사 사이에 체결된 'C배후단지 입주기업 사업시행에 관한 실시협약서' 제26조에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정하고 있다. 소외 회사는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에서 '소외 회사는 위 실시협약서 제26조에 따라 출자지분 5% 이상 변경되는 경우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고, 부산항만공사로부터 주주변경을 승인받지 못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④ B은 2017. 5. 29. 원고에게 보낸 '주식양수도 계약 이행 촉구'(갑 제5호증의1)에서 '종래 B 소유였던 소외 회사 주식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인도될 예정이나, 원고가 부산항만공사의 주주변경 승인을 받지 못하여 주식양수도 절차가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기재하여, 이 사건 주식이 여전히 B에 귀속되어 있고,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주식양수도절차가 아직 이행 중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

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B에 이 사건 주식의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한 이후에도 소외 회사에 대하여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한 적이 없다.

⑥ 비록 이 사건 신고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 420,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된 소외 회사 작성의 주주명부확인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사이트에 공시된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 변동' 등이 첨부서류로 제출되었으나, 제1심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이는 취득세 신고를 위한 원고의 요청에 따라 소외 회사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공시한 것이므로, 원고가 실제로 소외 회사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 지위를 취득하였는지 여부와는 관련이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2

라. 이 사건 신고가 무효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로부터 신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부과처분에 의하여 이를 확정하게 된다),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조세채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257 판결,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141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신고납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으로 나아간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에 하자가 존재하더라도 그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하자가 후행처분인 징수처분에 그대로 승계되지는 않는 것이고,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두1439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음에도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과 그에 대한 가산세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처분이 혼합된 처분으로서 신고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2

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징수처분의 위법성뿐만 아니라 가산세의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두19066 판결 등 참조).

한편, 신고납세방식 조세에서 신고내용에 의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어서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같이 과세표준 등의 신고행위나 이에 기초한 과세처분이 객관적으로 타당한 법적 근거와 합리성이 없는 때에는 그 하자는 중대할 뿐 아니라 명백하여 무효이다(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4두47099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스스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음에도 그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가 원고에게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취득세 86,276,360원, 농어촌특별세 8,627,630원 부분)과 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543,540원,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가산세 54,350원 부분)을 한 것으로서, 원고는 이 사건 신고가 무효라는 이유로 위와 같이 본세에 대한 징수처분과 가산세에 대한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이 혼합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신고가 무효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신고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 지위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신고한 하자가 있으나, 그 하자가 명백하여 무효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2

① 원고는 이 사건 신고를 하면서 소외 회사 소유의 창원시 진해구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일자 '2017. 1. 25.', 취득원인 '취득(과점주주)'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부산항만공사의 주주변경 승인이 있어야 소외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을 행사하는 과점주주 지위를 취득할 수 있음을 밝히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과점주주 지위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신고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고, 이 사건 계약 및 관련 규정의 내용, 부산항만공사의 주주변경 승인 여부, 소외 회사 및 B의 입장 등을 검토·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으므로, '신고내용에 의하더라도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어서 납세의무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계약서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식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B 작성의 영수증, 이 사건 신고 당시 원고가 소외 회사의 주식 420,000주를 보유한 것으로 기재된 소외 회사 작성의 주주명부확인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사이트에 공시된 소외 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보유 변동' 등을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등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오인할 만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였다.

③ 이 사건 신고 당시 피고가 원고의 신고행위에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④ 원고로서는 이 사건 신고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 지위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신고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 등을 청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2

구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연우

판사 이동현

판사 이세훈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2

별지1

관계 법령

■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 지방세법 시행령(2017. 3. 27. 대통령령 제279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2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 지방세기본법(2016. 12. 27. 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항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항만배후단지"란 항만구역에 지원시설 및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고 이들 시설의 기능 제고를 위하여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며, 항만을 이용하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2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하여 제42조에 따라 지정·개발하는 일단(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1종 항만배후단지: 무역항의 항만구역에 지원시설과 항만친수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육성함으로써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나. 2종 항만배후단지: 항만구역(1종 항만배후단지로 지정한 항만구역을 제외한다)에 일반업무시설·판매시설·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항만 및 1종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제고하고 항만을 이용하는 사람의 편익을 꾀하기 위한 항만배후단지

제48조(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지침의 내용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2016. 12. 16. 해양수산부고시 제2016-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4(출자자 등의 변경)

① 입주기업(입주대상기업을 포함한다)이 양도·양수를 통해 출자자를 변경하거나 100분의 50이상의 출자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승인 요청을 받은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승인하여야 하고, 승인여부와 내용을 요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1. 출자자 변경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의 재무상태 또는 신용도가 악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출자자 변경 이후 사업계획에 따른 화물창출계획 또는 고용창출계획 등 사업계획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출자자 변경이 1종 배후단지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

③ 출자자 변경 없이 100분의 5 미만의 출자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입주기업 또는 입주대상기업은 관리기관에 양도내용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2

별지2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

■ B 보유 소외 회사 주식양수도계약서

* 갑: B

을: 원고

대상주식: “갑”이 보유하고 있는 소외 회사 발행 보통주 420,000주

제2조(매매대금)

"갑"은 대상주식을 51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금액으로 "을"에게 매도하고, "을"은 이를 매수한다. 매매대금은 어떤 이유로도 조정될 수 없다.

제4조(매매대금 지급기일 등)

① "을"은 본 계약 체결 이후 2011년 11월 15일에 체결한 "갑"과 일본법인 A, 일본법인 B, 싱가폴법인 C 및 ㈜F(이하 “지분우선매수권자”) 간의 Joint Venture Agreement(이하 “주주간계약서”)에 따라 우선매수통지기간 이내에 지분우선매수권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지분우선매수권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갑" 및 주간사에 통지한 후 3영업일 이내에 확정된 제2조의 매매대금에서 제3조의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이하 “잔금”)을 제5항에 기재된 "갑"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한편 "을"은 매매대금 잔금납부기일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갑"의 동의 및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1회에 한해 최대 3영업일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대상주식의 이전)

① "갑"은 "을"이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으로부터 본 계약에 따른 투자자 변경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10영업일 이내에 본 계약의 내용 및 본 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타 제반 사항을 완료하여 대상주식을 "을"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갑"은 "을"이 제2조에서 정한 매매대금과 부담하여야 할 제비용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인도일(이하 “거래종결일”)까지 "을"에게 대상주식의 주권(발행된 경우), 대상주식의 명의개서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 대상주식 발행회사(이하 “발행회사”)의 등기임원들의 사임서와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대한 "갑"의 내부수권서류를 "을"에게 교부하며 "을"이 발행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협력을 제공하기로 한다.

제6조("갑"의 확인사항)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2

① "갑"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생회사 B의 법률상 관리인이며, "갑"은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본 계약을 체결하고 회생법원의 허가를 조건으로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② "갑"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대상주식을 적법하고 유효하게 소유하고 있으며, 대상주식은 적법하게 발행되었고, 거래종결일에 대상주식을 어떠한 제한부담도 설정되지 아니한 상태로 "을"에게 이전할 것임을 확인한다.

③ "갑"은 본 계약 체결일 이후 거래종결 시까지 소외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의 자산의 매각, 자금의 차입, 채무의 보증, 배당 등 대상주식의 가치에 변동이 생기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한다.

제10조(계약의 해제)

① 전쟁, 천재지변, 기타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의하여 당사자 일방이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제4조 제1항의 주주간계약서에 따른 지분우선매수권자의 우선매수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 또는 본 계약 체결 이후 1종 항만배후단지 관리기관으로부터 투자자 변경에 대한 승인을 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중 일방은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지로서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을"로부터 받은 계약금(발생하지 포함, 제세공과금 제외) 및 잔금의 일부를 "을"에게 반환한다.

② 대상주식에 설정되어 있는 회생담보권이 거래종결일까지 해제되지 않는 경우, "을"은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은 회생법원의 허가를 얻어 "을"로부터 받은 계약금(발생이자 포함, 제세공과금 제외) 및 잔금의 일부를 "을"에게 반환한다.

③ 아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 대한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을"로부터 받은 계약금(발생이자 포함, 제세공과금 제외)은 위약벌로서 "갑"에게 귀속되며, 이와 별도로 "을"은 본 계약의 해제로 인해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가) "을"이 정해진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본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잔금의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갑"으로부터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받고도 10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9-04-02

■ 질권설정 계약서

* 질권설정자: B

질권자: 원고

제1조(계약의 목적)

2016. 12. 21. 실시된 질권설정자의 소외 발행 보통주 420,000주(이하 "본건 주식") 매각(이하 "본건 거래")을 위한 입찰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통보 받은 질권자는 2016. 12. 30. 본건 거래에 관한 계약(이하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주식양수도 계약상 양수도대금의 10%인 510,000,000원을 B 명의의 G은행 예금계좌에 예치하였으며, 질권설정자는 동 금원을 질권설정자 명의의 H은행 예금계좌(이하 "본건 예금계좌")에 예치하였는바, 본 계약은 질권자의 계약금 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설정자의 본건 예금계좌에 예치된 별첨2-1 기재 예금의 반환청구권(이하 "본건 예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질권의 설정)

질권설정자는 본건 예금채권에 관하여 별첨2-2 양식의 질권설정 승낙신청서에 H은행의 확정일자 있는 적법한 승낙을 받아 본건 예금채권에 관한 예금증서 또는 예금통장과 함께 이를 질권자에게 교부한다.

제6조(주식양수도 계약의 잔금 추가예치에 따른 질권설정계약의 변경)

질권자가 질권설정자와의 별도 합의에 따라 본건 예금계좌 또는 질권설정자가 지정하는 질권설정자 명의의 다른 예금계좌에 주식양수도 계약의 잔금을 예치하는 경우, 질권설정자는 추가 예치된 금액에 대해 본 계약과 동일한 방식 및 조건으로 질권자에게 질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한다.

제7조(질권의 존속기간)

1. 본 계약에 의한 질권의 존속기간은 주식양수도 계약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본건 주식의 인도일까지로 한다.
2. 질권자는 본계약에 의한 질권의 존속기간이 종료된 경우, 이러한 사실을 H은행에 즉시 통지하도록 한다. 끝.